

심사보고서

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
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
일괄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15 |
|----------|----|

2022. 7. 18.(월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7월 6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7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7월 18일

-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신형근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2022년 4월 15일 및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 또는 폐지된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우리 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공보관에서 대변인으로 부서 명칭 변경(2022. 7. 1. 시행)에 따른

관련 조례 개정(안 제1조 ~ 제6조)

-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
-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
-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-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
-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
-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

○ U대회추진과 폐지(2022. 4. 15. 시행)에 따른 조문 삭제(안 제5조)

-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○ 금번 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15일 및 2022년 7월 1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첫째, 2022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공보관이 대변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6건에서 인용된 명칭을 변경하고,
- 둘째, 2022년 4월 15일 시행된 조직개편에서 U대회추진과가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에서 인용된 U대회추진과를 삭제하는 것임.

○ 금번 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15일 및 2002년 7월 1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된 명칭을 변경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」

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공보관에서”를 “대변인이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공보관”을 각각 “대변인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공보관”을 “대변인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제2호 중 “공보관”을 “대변인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공보관실로”를 “대변인에게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공보관”을 각각 “대변인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제3호가목 중 “공보관, 감사관, U대회추진과”를 “대변인, 감사관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일반행정분과의 부서란 중 “공보관”을 “대변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5조(발행부서) 도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무는 <u>공보관</u>에서 주관한다.</p> <p>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<u>공보관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은 <u>공보관</u>으로 하고 위촉직은 6명 이내의 홍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| <p>제5조(발행부서) ----- ----- <u>대변인</u> ----- -----.</p> <p>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대변인</u>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<u>대변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|

2.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제2조(구성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 · 국 · 본부장과 정책기획관, <u>공보관</u>으로 하고,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기타 위원회의 목적</p> | <p>제2조(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대변인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|

| | |
|---|--|
| <p>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이를 위촉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|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|
|---|--|

3.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3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심리전담당간사 : <u>공보관</u></p> <p>3. ~ 7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| <p>제3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대변인</u>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|

4.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제3조(위촉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</p> | <p>제3조(위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|

| | |
|--|--|
| <p><u>공보관실로</u>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6조(운영)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 총괄은 <u>공보관</u>이 담당하되,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<u>공보관</u>과 협의하여 진행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·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.</p> <p>② <u>공보관</u>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 | <p><u>대변인</u>에게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운영) ① -----</p> <p>----- <u>대변인</u>-----</p> <p>----- <u>대변인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<u>대변인</u>-----</p> <p>-----.</p> |
|--|--|

5.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제30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</p> <p>②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행정문화위원회</p> <p>가. <u>공보관, 감사관, U대회추진과, 행정국, 문화체육관광국, 충청북도자치연수원,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| <p>제30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가. <u>대변인, 감사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|

나.·다. (생략)

4. ~ 6. (생략)

③ (생략)

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【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】

제3조(보좌기관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밑에 대변인을 둔다.

② ~ ③ (생략)

제4조(공보관)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을 보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.

1. ~ 25. (생략)